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농산업수출진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(4급 1명, 5급 2명, 6급 1명)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 호, 2023. 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수출진흥과의 명칭을 농식품수출진흥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4. 3. ~ 4. 1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6항 중 “수출진흥과”를 “농식품수출진흥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출진흥과장”을 “농식품수출진흥과장”으로 한다.

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(농산업수출진흥과) ① 농산업수출진흥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농산업수출진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. 별표 16 제1호1)의 조직란 중 “농업생명정책관”을 “동물복지환경정책관”으로 한다.

별표 17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농산업수출진흥과(존속기한: 2025년 4월 30일)

총계	4
일반직 계	4
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1

행정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	2
행정주사 · 농업주사 · 수의주사 · 시설주사 · 통계주사 · 전산주사 · 공업주사 · 방송통신주사 · 사서주사 또는 환경주사	1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농업혁신정책실) ① ~ ⑤ (생략)	제9조(농업혁신정책실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농업혁신정책실에 스마트농업정책과 · 첨단기자재종자과 · 과학기술정책과 · 친환경농업과 · 빅데이터전략팀 · 농업경영정책과 · 농지과 · 공익직불정책과 · 농업금융정책과 · 재해보험정책과 · 청년농육성정책팀 · 푸드테크정책과 · 식품외식산업과 · <u>수출진흥과</u> 및 그린바이오산업팀을 두되, 과학기술정책과장 및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, 빅데이터전략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청년농육성정책팀장 및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농업사무관으로,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농식품수출진흥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⑦ ~ ⑱ (생략)	⑦ ~ ⑱ (현행과 같음)
⑳ <u>수출진흥과</u> 장은 다음 사항을	㉑ <u>농식품수출진흥과</u> 장-----

분장한다.

1. ~ 11. (생 략)

㉑ (생 략)

<신 설>

--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㉑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농산업수출진흥과) ① 농
산업수출진흥과의 과장은 서기
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
다.
② 농산업수출진흥과에 두는 공
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
과 같다.